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20 선고 2021가단389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6. 29.

판 결 선 고 2021. 7. 20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6. 28.부터 2021. 6. 5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